

항로표지 장비·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(폐업)신고서

*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기관명	전화번호	
	대표자	생년월일	
	주 소		
휴업(폐업) 사유			
휴업기간 (폐업일)	년 월 일 ~ 년 월 일(일간)		

「항로표지법」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로표지 장비·용품등 검사대행기간의 휴업(폐업)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
		없음